

#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[김영섭 의원 발의]

의안번호	2104
------	------

발의일자 : 2021. 5. 28.

발 의 자 : 김영섭 의원

찬 성 자 : 강수정 의원

## 1. 제안이유

최근 개인형 이동장치가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주목 받고 있고, 이용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 (안 제3조)
- 다. 개인형 이동장치의 가이드라인 마련(안 제4조)
- 라. 실태 조사 등(안 제5조)
- 마.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(안 제6조~제7조)
- 바. 협력체계 구축(안 제8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령 : 「도로교통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
- 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- 다. 입법예고 : 2021. 5. 28. ~ 6. 2.

## 서울특별시 금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「도로교통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라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**제4조(가이드라인의 마련)**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에 관한 가이드 라인을 마련하여 이용자에 대한 안전교육과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.

**제5조(실태조사 등)**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**제6조(안전교육)**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7조(안전문화 조성 등)**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문화 조성 및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.

**제8조(협력체계 구축)**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중앙 정부, 관련 기관 및 법인·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**제9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관계법령

## □ 도로교통법

[시행 2021. 1. 12.] [법률 제17891호, 2021. 1. 12., 일부개정]

제2조(정의) 19. “원동기장치자전거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한다.

가. 「자동차관리법」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이륜자동차  
나.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(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)의 원동기를 단 차(「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는 제외한다)

19의2. “개인형 이동장치”란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.

## □ 도로교통법 시행규칙

[시행 2021. 3. 1.] [행정안전부령 제236호, 2021. 1. 21., 타법개정]

제2조의2(개인형 이동장치의 기준) 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“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「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」 제15조제1항에 따라 안전확인 신고가 된 것을 말한다.

1. 전동킥보드
2. 전동이륜평행차
3.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

[본조신설 2020. 12. 10.]